

# 갈등영향분석모형의 구축과 적용 : 울진 신규원전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박 홍 업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 I. 서 언

2007년 2월 정부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갈등규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같은 해 5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공공갈등관리를 행정행위로 공식 규정화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공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제정해 공공갈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갈등규정 제정이 뒤늦은 감이 있다. 본 논문은 갈등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의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의 모형을 구축한 후에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모형구축과 적용을 통해 갈등영향분석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실제 다른 갈등사례에 적용할 때에 필요한 유의점과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 II. 갈등영향분석의 이해

### 1. 갈등영향분석의 개념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기관이 추진 또는 승인하는 법령의 제·개정, 정책,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예상·분석하고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4: 33). 정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진단한 후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 갈등영향분석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갈등규정 제 10조 1항은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주체와 실시 기준, 그리고 실시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① 실시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② 실시기준은 해당 공공정책이 i) 국민생활에 증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ii) 국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실시 시기 :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으로 명시되어 있다. 실시 시기에 대한 이 같은 규정은 갈등영향분석이 갈등해결보다는 갈등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진 절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2. 갈등영향분석의 분석 대상

Susskind & Thomas-Larmer는 갈등영향분석을 갈등예방을 위한 권고안(recommendations)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information-gathering exercise)으로 파악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석된다고 말한다(Susskind & Thomas-Larmer, 1999: 100). ① 갈등이나 합의형성 노력과정에서의 누가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를 파악한다. ②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쟁점이 중요한지를 파악한다. ③ 주어진 제도적, 재정적, 그리고 다른 제약요인 하에서 합의형성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한지를 파악한다. ④ 만일 합의형성절차를 밟는다면, 어떠한 상황조건하에서 핵심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데 동의할 것인지를 파악한다.

## 3.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

정부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을 결정·추진할 경우에는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들어 갈등구조를 파악하고 실현가능한 갈등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하다(국무조정실, 2005:1).

## 4.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목적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Susskind & Thomas-Larmer, 1994: 104; 신창현, 2005: 49-50). ①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를 파악한다. ② 실제 이해관계를 분석해 합의 영역과 불합의영역의 범위를 파악한다. ③ 상호존중의 자세로 협상에 임할 유인과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④ 합의형성절차를 추진할 때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⑤ 합의형성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해관계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 5. 갈등영향분석의 중요성

Susskind & Thomas-Larmer는 갈등영향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Susskind & Thomas-Larmer, 1999: 105-106). ① 갈등영향분석의 주관자(convenor)인 해당공공기관이 갈등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해당 공공기관은 갈등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② 독립적인 갈등영향분석자(analyzer)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파악하고 있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③ 분석자는 합의형성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를 제거하고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촉을 설득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운영규칙(credible ground rules)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를 간과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합의형성노력 자체에 대한 비판을 방지할 수 있다.

## 6. 주관자, 분석자 그리고 진행자(facilitator)의 관계

주관자(convenor)가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를 결정하고 의뢰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하고, 분석자(analyzer)란 주관자의 의뢰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한다.<sup>1)</sup> 진행자란 주관자의 의뢰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이나 갈등조정협의회를 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의미하고 주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했던 분석자나 전문조정인(professional mediator)이 맡는다. 주관자와 분석자 사이에는 철저히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관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 III. 갈등영향분석모형의 구축

갈등영향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형으로는 기존의 공공사업 갈등을 분석할 때에 활용되어 왔던 ‘갈등분석을 위한 기본요소 모형(Basic Elements Model for Conflict Analysis)’과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갈등평가(Conflict Assessment) 기법이 있다.

### 1. 갈등분석을 위한 기본요소모형(Basic Elements Model for Conflict Analysis)

#### 1) 갈등개요(conflict profile)

갈등분석의 첫 단계 작업으로 예상되는 갈등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으로 갈등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양상을 띠고 발생할 것인지(또는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는 중요하다. 갈등개요 단계에서 분석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갈등영향분석과 똑같은 내용의 것을 미국에서는 갈등평가(conflict assessment)라 한다. 갈등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을 평가자(assessor)라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갈등영향분석이라 하므로 평가자(assessor)가 아닌 분석자(analyzer)로 호칭한다.

① ‘무엇을’, ‘언제’, ‘어디서’에 관한 답변을 통해 갈등의 간략한 개요를 파악한다. ② 갈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를 깊게 한다. ③ 갈등을 관리할 때 부딪칠 수 있는 도전(challenges)을 이해한다. ④ 정책 또는 사업이 갈등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⑤ 갈등지표(conflict indicators)를 개발하고 갈등이 지닌 위험(risk)을 평가함에 있어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한다.

## 2) 이해관계자 분석(stakeholder analysis)

갈등분석의 두 번째 단계로 개별적인 갈등 행위자(individual conflict actors)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핵심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갈등상황이 어느 행위자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예상하고 연합(alliance)과 동맹(coalition)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① ‘누가’에 관한 답변을 통해 갈등행위자를 분석한다. ② 이해관계자를 분류한다(직접적 이해관계자, 간접적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 ③ 갈등에 관여되었거나 또는 갈등에 의해 영향 받는 집단들의 이해관계, 입장,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④ 목표 집단을 결정하고 목표 집단 간의 구분을 위한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 ⑤ 협력을 위한 파트너를 선정한다. ⑥ 정책 활동을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한다. ⑦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관계 및 연합(alliance)관계를 파악한다(갈등지도 작성). ⑧ 핵심적인 갈등쟁점을 이해한다.

## 3) 원인분석(cause analysis)

갈등분석의 세 번째 단계로 갈등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원인이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겪을 것인지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① 갈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해결도 어렵게 만드는 장기적, 구조적 요인을 조사한다. ②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갈등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갈등의 원인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③ 갈등의 원인과 갈등을 지속시키는 요인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갈등 요인별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⑤ 갈등해소를 가로막는 요인과 갈등해소를 촉진시키는 요인을 구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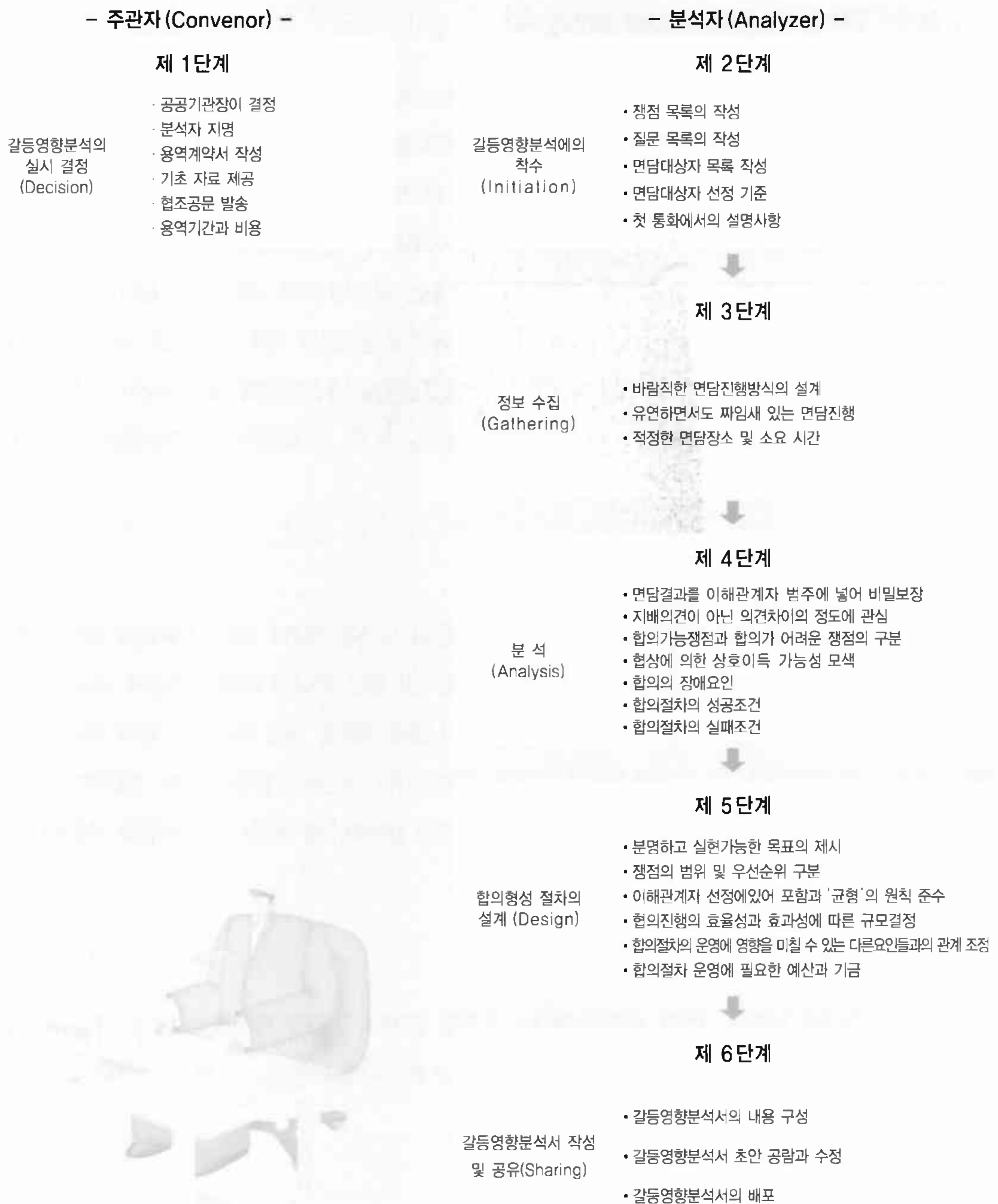
## 4) 동향 및 기회(trends and opportunities)

갈등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갈등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그 경우 합의형성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갈등예방 및 해결 대책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 2. 갈등평가 (Conflict Assessment) 모형

갈등평가모형은 6단계로 구성된다. 제1단계는 주관자 (convenor)에 의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5단계는 분석자 (analyzer)에 의해 실시된다.

〈그림 2〉 협의기구의 구성과 역할



## IV. 갈등영향분석모형의 적용

위에서 구축한 갈등영향분석 모형은 실제 예상되는 갈등사례에 적용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적용사례는 울진 신규원전 건설 사례이고 갈등영향분석의 목적은 신규원전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에 앞서서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진단해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분석하고 합의형성절차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갈등영향분석은 2006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고 울진지역 내 37명을 대상으로 한 이해관계자 면담은 같은 해 7월 말부터 8월 초에 걸쳐 실시됐다.

### 1. 울진 신규원전 건설 계획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신규원전 1호기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규원전 2호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002년 5월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은 1999년 12월 산업자원부와 울진군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원전후보지 예정지역인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일대를 신울진부지로 지정, 고시하고 2005년 6월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2.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결정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심각한 갈등사태를 경험했던 정부와 한수원으로서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해 필요하다면 합의형성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중립적인 제 3의 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하였다. 계약의 주체는 한수원과 의뢰를 받은 제 3의 기관이 됐고 계약기간은 2006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로 정했다. 분석자는 한수원이나 울진지역의 이해관계에 중립적이며 갈등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정하였다.

### 3. 갈등영향분석에의 착수

먼저 면담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마련됐고 그에 따라 면담대상자가 결정됐다. 선정기준으로는 i) 지역 내 각 분야(직능별, 지역별, 성별)에서 대표성을 가진 인사, ii) 원전관련 업무와 관련 있는 인사, iii) 면담자가

2) 현재 울진에는 1호기(1988), 2호기(1989), 3호기(1998), 4호기(1999), 5호기(2004), 6호기(2005)가 건설되어 상업운전을 하고 있다.

추천한 인사 가운데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 정해졌다. 그 결과 주민대표 4인, 원전관련 시민사회단체 6인, 일반시민사회단체 9인, 지역공공기관 7인, 군의회 4인, 울진군청 3인, 산자부 및 한수원 4인 등 총 37인이 선정됐다.

#### 4. 면담의 진행

면담은 2인 1조(분석자 1인, 분석보조원 1인), 2개조로 편성해 진행했으며, 면담자마다 약 1시간 정도 면담이 진행됐다. 면담방식은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필기방식이 사용됐으며, 면담 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전화 면담을 통해 확인했다.

#### 5. 주요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주요 이해관계자로는 신규원전을 건설하고자 하는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이 있고, 울진지역에는 울진군청, 울진군의회,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있다. 각 이해관계자 별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과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울진 신규원전 건설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별 입장과 이해관계

이해관계자	입 장	이 해 관 계	
산업자원부	찬 성	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	
한수원	찬 성	국가적으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원자력사업의 지속성 유지	
울진군청	찬성(지역발전조건부)	신규원전 건설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받아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	
울진군의회	찬성(지역발전조건부)	신규원전 건설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받아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	
* 지역 주민	원전주변지역	원전주변지역 찬성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규모 증대
	그 외 지역	반대 없음	원자력발전소의 지역지원에 있어서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고의 기회 (전기사용요금 보조 등)
시민 사회 단체	**원전관련단체	반대 없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 신규원전건설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
	일반 단체	찬 성	신규원전 건설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받아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

## 6. 울진 신규원전 건설 관련 쟁점

### 1) 핵심 쟁점

울진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핵심 쟁점과 주요 쟁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핵심쟁점은 「신규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의 모색」으로 압축될 수 있다.

〈표 2〉 울진 신규원전 건설 관련 핵심 쟁점

핵심 쟁점		신규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의 모색
핵심쟁점의 세부항목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약속의 유효성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은 신규원전 건설은 이미 산자부와 울진군청 간에 합의되고 약속된 사안이므로 재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지역주민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
	14개항의 이행 여부	한수원은 14개항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
	조기착공 주장과 보상규모 최대화 주장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보다 조기착공이 더 중요하다는 지역여론과 착공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보상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사이의 갈등

### 2) 주요 쟁점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해 주요 이해관계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쟁점은 매우 많지만 그 가운데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다.

〈표 3〉 울진 신규원전 건설 관련 주요 쟁점

주요 쟁점	내용
신규원전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규모 확대 여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지원금액 이외의 특별지원 요구
원전관련 지역지원사업의 지역 내 형평성 문제	원전주변외 지역주민들은 원전주변지역 3개면과 그 외 면간의 형평성 제고를 요구하지만 주변지역주민들은 반대의사 표명
지역주민 고용확대 / 지역 업체 우대 요구	신규고용시 지역주민에게 가산점부여 요구 울진지역 내 하청업체에 대한 우대 요구
대주민관계 개선 요구	한수원의 체육시설 활용 지역상권에의 기여
덕천리 주민 이주 대책	이주대상주민과 한수원 간에 보상규모와 이주대책 관련 이견
국도건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요구	36번 국도 건설 예산 반영 요구



## 7. 갈등의 발생가능성 파악

원전 신규건설 사업과 관련해 갈등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면담대상자들의 의견은 <표 8>에 나와 있다. 갈등의 발생가능성에 관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신규원전 건설 자체에 대한 갈등의 가능성은 적지만 신규원전건설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지역발전 지원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유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8. 쟁점의 해소가능성 파악

신규원전건설과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핵심쟁점과 다양한 주요쟁점들이 이익갈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충분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아무리 해결가능성이 높은 갈등도 이해관계자 간에 충분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 9. 갈등예방을 위한 합의형성절차의 설계

### 1) 합의형성절차에 관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합의기구를 통한 합의형성절차의 마련 필요성에 대해 면담을 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그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다만 최종 책임을 가진 군청이나 한수원 등에서는 기관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합의형성절차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이해관계자	합의형성절차에 대한 의견
주 민	주민을 포함한 협의기구를 구성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원전관련 시민사회단체	원전신규건설에 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조직으로서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 협의체는 협상의 창구를 단일화 시키는 효과가 있고 민원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일반 시민사회단체	군청이나 군의회가 독점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주민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 공공기관	군청 또는 군의회가 협의 창구를 맡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킨 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뉨. 그렇지만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지역에서는 군청(군수)이나 군의회, 그리고 중앙에서는 산자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
군의회	군청과 군의회가 산자부, 한수원과 직접 협의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사회단체를 망라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되 군이 주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동시에 제시
군청	상향식 의사전달을 할 경우에 지역 내 경쟁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협의기구 보다는 군청이 직접 나서서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산자부 / 한수원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과 협의기구가 오히려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군청만으로 창구를 단일화 시키자는 의견으로 나뉨. 현실적으로는 후자에 더 많은 무게가 실려 있음. 그렇지만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를 군청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2) 합의형성절차의 설계 방안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한 지역 내 합의형성 절차로서 2가지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하나는 기존의 추진 방식 즉 사업의 주체인 산자부, 한수원이 군청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군의회를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기관간 협의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추진하는 주민참여방식이다.

## 3) 합의형성 절차의 제안

### (1) 추진방식

먼저 책임 있는 기관(산업자원부, 한수원, 군청, 군의회) 간에 협의를 통해서 어느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지를 결정하도록 권한다. 어느 정도의 갈등을 무릅쓰고라도 신규원전건설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것이라면 기관 간 협의방식이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신원전 건설과 관련해 어느 정도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갈등의 사전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주민 참여방식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보다 바람직하다.

### (2) 추진 기구

협의기구를 구성해 신규원전 건설관련 의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기구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협의기구의 구성과 역할

울진신규원전건설협의회  
(울진협)

- 전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
- 신원전건설과 관련해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최종 의결기구
- 2인의 공동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회의가 소집
- 공동위원장 포함 20인의 위원으로 구성

울진신규원전건설실무협의회  
(실무협)

- 울진협의 실무운영기구
- 울진협의 의제초안 마련, 운영규칙 초안 마련, 회의소집, 안전상정 등의 업무를 담당
- 울진협 위원인 2인의 공동간사의 합의에 의해 회의가 소집
- 공동간사 포함 4인의 위원으로 구성

### (3) 협의회 의제

실무협의 초안마련과 울진협의 의결을 통해 의제를 결정해야 하겠지만 협의회 착수 이전에 의제 초안을 만들어 본격적인 협의에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져 의제 초안을 제시한다.

① 4개기 원전추가건설 합의의 유효성과 14개 항목과의 관계, ② 14개 항목의 이행여부와 추가 발전방안마련, ③ 신규원전건설의 조기착공요구, ④ 신규원전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규모 확대 요구, ⑤ 원전관련 지원사업의 지역 내 형평성문제 제기, ⑥ 울진지역 내 고용확대 요구, ⑦ 한수원에 대한 대주민관계 개선 요구, ⑧ 덕천리 주민의 이주 대책, ⑨ 국도건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요구

## V. 결론 및 시사점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따라 앞으로 활발하게 사용될 갈등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았다. 이러한 모형구축은 앞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분석자에게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사례 제시를 발판으로 갈등영향분석 모형이 더욱 잘 다듬어지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형으로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갈등영향분석 모형의 구축 및 적용 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평가 모형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행하는 틀은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분석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합의형성절차를 설계하고 제시하는 것은 분석자의 몫이지만 실행은 주관자의 몫이니 만큼 양자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갈등영향분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관자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